

창원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54436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54436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3. 24 선고 2020가단121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담

담당변호사 박훈식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일, 공현필

변론종결 2023. 1. 12.

판결선고 2023. 2. 1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3. 24. 선고 2020가단121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85,1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8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진주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665 세대분에 대한 피엘(PL)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수급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그 직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수급 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경까지 이 사건 유리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유리공사와 관련하여 2019. 11. 30.경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공사대금 103,827,000원(공급가액 94,388,181원 + 세액

9,438,819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인 E는 2020. 4. 17. ‘2020. 3. 3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리공사 관련 미결제 채권 잔액이 103,827,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출채권조회서를 소지하고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매출채권조회서 하단에 명판과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여¹⁾ “상기 채권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내용은 당사 장부와 틀림없이 일치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하여 통지합니다. 또한 향후 본 확인사항의 상위함을 이유로 귀사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통지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피고의 확인통지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조회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유리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103,8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103,827,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회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20. 4. 27.경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6,827,000원(= 103,827,00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²⁾ 1) 이 사건 조회서는 원고의 직원 E가 ‘자신과 원고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 사건 유리공사에 관하여 마찰이 있다. 이 사건 조회서에 날인만 해 주면 자신과 원고의 대표이사간의 협의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피고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공사잔대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성³⁾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회서는 효력이 없다.

2) 또한 이 사건 유리공사 대금 중 고용보험료 등의 공과금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는

743,616,840원인데, 이 사건 조회서가 작성될 당시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766,714,524원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

사건 조회서 작성 이후 원피고는 이 사건 유리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유리공사 대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유리공사에 투입된 인건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고용보험료 등 손해액 22,890,000원, ②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비닐보양 공사비용 15,600,000원, ③ 이 사건 유리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7,700,000원을 그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1, 2, 4, 1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20. 4. 17. 이 사건 조회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유리공사 대금은 103,827,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7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조회서에 피고의 명판과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날인행위도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조회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조회서의 내용이 통정허위표시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17. 11.경부터 10여 차례 피고에게 기성금 청구를 하였는데, 2018. 11.경 피고의 직원인 F이 원고의 직원인 E에게 ‘원고가 청구한 기성금이 C로부터 받는 유리공사 부분에 관한 기성금보다 많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2018. 11. 6.경 기존의 기성금 청구금 합계 829,632,902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912,596,192원)을 7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839,300,000원)으로 감액한 수정청구서(이하 ‘이 사건 수정청구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이러한 수정청구서를 받은 후 다시 감액을 요청하는 등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조회서상 미지급 금액 103,827,000원은 이 사건 수정청구서상 공사금액 83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원고가 확인한 기지급 공사대금 735,473,000원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회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유리공사 대금이 766,714,524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735,473,000원을 초과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리공사를 재하도급할 당시 약정한 계약금액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명확하지 않다⁴⁾. 그 중에서도 피고는 제1심에서는 766,714,524원⁵⁾ 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이 821,000,000원이었고, 피고는 이 공사대금을 C로부터 지급받으면 그 금액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유리공사 부분 공사대금 중 직접공사비는 743,616,840원인데, 피고는 이를 초과한 766,714,524원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유리공사의 직접공사비라고 주장하는 743,616,84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원피고가 이 사건 유리공사의 계약금액을 위 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회서상 미지급 공사대금 103,827,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7,000,000원을 공제한 96,827,000원(= 103,827,000원 - 7,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액 합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8행의 “피고는”부터 밑에서 5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7행의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공제 내지 상계항변

가) 이 사건 유리공사에 투입된 인건비 관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직접 시공사인 C에 이 사건 유리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어 피고가 C에 인건비를 청구수령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인부들의 명단, 인건비 산정자료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인건비를 자재비 등의 항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유리공사와 관련한 인부들의 4대보험료를 피고가 납부하게 되어 22,8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22,89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닐보양 공사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비닐보양 공사비용 15,6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시공사인 C로부터 ‘기포콘크리트 방통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유리가 미시공된 세대의 창을 비닐로 보양해 줄 것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가 2017. 12.경 15,600,000원을 지출하여 비닐보양공사를 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공사지연 등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위

비닐보양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는 비닐보양 공사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제13호증의 제8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비닐보양 공사비용 중 7,800,000원(= 15,60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하자보수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의 미시공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7,7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7 내지 9, 16, 1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완료한 이 사건 유리공사 부분에 오시공 내지 미시공 하자가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3. 4. 이 사건 유리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던 G(상호명 : H)에게 7,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하자보수비용 7,700,000원에는 피고가 담당한 창호공사 부분의 오시공 내지 미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7,700,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유리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구분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7,700,000원을 모두 이 사건 유리공사의 미시공오시공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함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서 이 사건 유리공사가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유리공사의 미시공오시공의 내용과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리공사의 미시공오시공으로 인한 손해의 액수는 3,850,000원(= 7,700,000원 × 1/2)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는 위와 같이 비닐보양 공사비용과 하자보수비용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위 공제 주장을 상계항변으로 선택하기로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동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유리공사를 완료하고 기성금 청구를 한 2018. 11.경에는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자동채권인 피고의 비닐보양 공사비용 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이 사건 유리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는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어 양 채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 채권은 2018. 11.경에는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8. 21.자 답변서가 2020. 8.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의 위 채권 11,650,000원(= 7,800,000원+ 3,85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85,177,000원(= 96,827,000원 - 11,650,000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5,1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유리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진민희, 판사 하상제, 판사 장우영

1)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나 경리직원이 아닌 E가 피고의 명판과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피고의 명판과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22. 3. 22.자 항소이유서 내용에 따라 주장을 정리하였다.

3) 피고의 명판과 대표이사 도장이 확인통지 부분에 날인된 것을 말한다.

4) 이 사건 유리공사의 재하도급 당시 원피고는 계약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경쟁입찰에 참여한 1순위 업체의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금액 712,087,201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최초 견적가 821,341,848원의 중간 금액이라고 설명한다.